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9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허 영·김교흥·김문수

곽상언 · 위성곤 · 박 정

이훈기 · 임호선 · 박민규

이개호 • 전재수 • 소병훈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제 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 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
	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u>수 있다.</u>
<u><신 설></u>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
	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
	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
	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
	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
	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
	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
	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
	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
	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 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 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